#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서부지법 2015. 12. 18. 2015고정1144]



## 【판시사항】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5호,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하는 점(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서 '개인정보'와 '처리'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71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19조,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1호, 제2호, 제5호

## 【전문】

【피고인】

【검 사】이지윤 외 1인

【변 호 인】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김학웅

####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